

유 의 사 항

1.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와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병역의무부와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와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